

우크라이나의 변경된 건설 면허 제도 및 법률 동향

우크라이나의 건설 면허 제도는 최근 몇 년간 중요한 법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히 2022년 발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건설 면허 제도 동향과 관련하여 현 전시 상황 속에서 임시 방안으로 도입된 건축물 신고제도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작업의 위험등급 및 법적 기준

우크라이나 건설법은 건축물의 위험도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를 CC1, CC2, CC3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위험등급은 건설 활동의 영향 범위와 위험도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계획 활동 규제"에 관한 우크라이나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위험등급"은 건축물의 위험도,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위험, 경제적 및 사회적 손실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건설 작업의 위험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CC1:** 경미한 위험을 지닌 건축물로, 일반적으로 4층 이하의 주택이나 소규모 상업시설에 해당함.
- CC2:** 중간 수준의 위험을 지닌 건축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가령 100미터 이하의 건물이나 공공시설에 해당함.
- CC3:** 고위험 건축물로, 대형 공공시설, 중요한 국가 시설이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등 높은 위험을 동반하는 건축물에 해당함.

각 건축물의 위험등급은 여러 평가 기준을 통해 결정됩니다. 2013년 우크라이나 건설 규격([ДСТУ-Н Б В.1.2-16:2013 (ГОСТ)])은 각 위험등급별 평가 지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격은 건축물의 크기, 위험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주요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 건축물에 상주하는 사람의 수, 외부에 위치하는 사람의 수 등.

Contact

백운재 변호사

02-528-5473
yjbaek@yulchon.com

이경준 변호사

02-528-5411
kjlee@yulchon.com

이화준 외국변호사

02-528-5519
leehj@yulchon.com

우재형 변호사

02-528-5904
jhwoo@yulchon.com

정규진 외국변호사

02-528-5213
kyujinjung@yulchon.com

조은진 외국변호사

02-528-5491
ejcho@yulchon.com

-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 건축물에 상주하는 사람의 수, 외부에 위치하는 사람의 수 등.
- **경제적 손실:** 건축물 파손 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규모.
- **문화재 손실:**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의 존재 여부.
- **기반 시설 중단:**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중단 가능성.

우크라이나 건설 면허 제도 및 신고제도의 변화

2020년 3월 18일부터 기존 우크라이나의 건설 면허 제도가 중단되면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의 개혁 및 관련 법개정을 당시 추진중에 있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며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법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2022년 3월 19일부터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시 상태에서 건설 면허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 활동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전시 상황에서도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허 발급 없이 관할부처에 건축물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전시 상황 중 건설업 수행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 제출 방법은 전자 형식과 서면 형식이 있습니다.

- 전자 제출방식: 전자 민원 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디아(Diia) 앱을 통해 제출
- 서면 제출방식: 시민 서비스 센터(CNAP)를 통해 제출

신고서 작성 시 경제 활동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기입할 경우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건설 면허 제도 폐지와 함께 임시적으로 신고서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신고서 제출만으로는 모든 건설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위험도 및 작업 단계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준비 작업을 위해서는 '건설 준비 작업 개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물 위험등급이 CC1, CC2, CC3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 작업 허가' 및 '완공 건축물 가동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물 신고 제도는 임시 방안으로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전시 기간 중 기존 면허가 만료되면 전쟁 종료 후 3개월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때 사업자들은 전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규정에 따라 건설 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하거나 추후 법개정 여부에 따라 건설업 활동에 필요한 서류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Yulchon Legal Update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건설 면허 제도는 전시 전후의 상황 속에서 꾸준히,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들은 건설 활동 신고서와 건설 면허(라이선스) 간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건설업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 대선과 같은 국제 정세의 격변으로 종전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전쟁 종료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건설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건설 법령 및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